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 915 호

2010년 4월 13일 화요일

조 례

○ 조례 제2010- 10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조 례

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권한대행
부 구 청 장 황 흥 구

2010년 3월 26일

남동구 조례 제1002호

**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**

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할 경우 고문이 될 수 있고, 이외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☐ 개정 이유

- 구의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할 경우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함. (제17조제1항)